

의안번호	2210574
의 퇴 인	정춘생의원
회 답 일	2025.7.9.
추 계 번호	25D2979
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주민소환 청구 및 개표기준이 완화되어 투표 및 개표가 추가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억 1,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0억 1,700만원(연평균 4억 3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평균
주민소환 청구 및 개표 기준 완화 (안 제7조, 안 제8조 및 안 제22조)	411	379	387	395	445	2,017	403

주: 본 추계는 이전 주민소환 투표 및 개표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주민소환투표권)	주민소환 투표권자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	의무규정
2	안 제7조(주민소환투표의 청구)	주민소환투표 실시 청구 서명인수를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동시지방선거의 전국 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로 함 * 현행 주민소환투표 실시 청구 서명인수 -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: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- 시장·군수·구청장: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- 지방의회의원: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	의무규정
3	안 제8조(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)	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소환 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	의무규정
4	안 제22조(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)	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일 때 개표하도록 함 * 현행법은 3분의 1 이상일 때 개표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조(주민소환투표권)	-	미대상: 18세 주민이 주민소환투표가 가능하더라도 18세 인구 비중이 19세 이상 대비 약 1% ¹⁾ 임을 고려하면 투·개표 관리, 선거공보물 등 관련 소요 예산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2	안 제7조(주민소환투표의 청구)	○	
3	안 제8조(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)	○	
4	안 제22조(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년 1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추가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

- 2020년~2024년까지 5년간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된 28건²⁾ 중 서명부가 제출된 건은 6건으로 이 중 개정안의 투표 실시 서명인 비율인 직전 전국동시지방선거(2022년) 투표율 50.9%의 100분의 15인 7.635%를 적용하게 되면 투표가 가능한 건은 2건임

[표 2] 서명부 제출 주민소환 현황

년도	지역	대상	서명인 비율
2020	부산 부산진구	구청장	2.1%
2020	부산 부산진구	구청장	0.4%
2020	부산 부산진구	구청장	1.5%
2021	경기 과천시	시장	투표 실시
2023	경북 상주	시장	13%
2023	전북 남원	시장	14.6%

주: 동 기간동안 총 28건의 주민소환이 진행되었으며, 서명부 미제출로 종결된 건은 22건임

자료: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1) 2024년 기준 18세 인구 441,107명, 19세 이상 인구 43,625,892명(자료: 통계청)

2) 소환청구인대표자가 대표자증명서를 교부받은 건을 기준으로 함

- 주민소환을 추진하였으나 현행 투표 실시 서명인 비율에 미달하여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건이 있을 수 있고, 안 제8조에서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³⁾에 따라 주민소환 청구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년 1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추가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
-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추계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5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었을 때 이 중 2건의 주민소환은 개표가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
 - 주민소환 제도 시행(2007년) 이후 투표가 실시된 건은 11건인데 이 중 완화된 개표 기준(1/3 이상 투표→1/4 이상 투표)을 적용했을 때 개표가 이루어지는 건은 4건(36.6%)으로, 기준 완화에 따른 개표 실시 비율을 고려하여 5건 중 2건이 개표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

[표 3] 주민소환투표 실시 현황

년도	지역	대상	투표율
2007	경기 하남	시장	31.1%
		시의원	23.8%
		시의원	37.6%
		시의원	37.6%
2009	제주	도지사	11.0%
2011	경기 과천	시장	17.8%
2012	강원 삼척	시장	25.9%
2013	전남 구례	군수	8.3%
2019	경북 포항	시의원	21.75%
		시의원	21.75%
2021	경기 과천	시장	21.7%

주: 주민소환 제도 시행(2007년) 이후 현황임

자료: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- 실시되는 2건의 개표는 지방선거 다음해인 2027년과 2031년에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
-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지금까지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 사례가 없던 점을 고려하여 투표 및 개표에 따른 비용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산정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3) 2020년~2024년까지 5년간 총 28건의 주민소환이 진행되었는데 임기가 만료되는 2022년에는 주민소환 건이 없었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가적으로 실시되는 주민소환 투표와 개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추계의 전제에 따라 주민소환 투표는 매년 1건씩 실시되고, 이 중 개표는 2027년과 2031년에 각 1건씩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
- 주민소환 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근 사례를 준용하여 358백만원으로 가정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함⁴⁾
 - 경북 포항 317백만원(2019년), 경기 과천 443백만원(2021년), 강원 양양 312백만원(2025년)
- 개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산하는 개표 소요비용 중 투표인수가 10만 미만인 경우(38백만원⁵⁾)를 적용한 후 물가상승률을 적용
 - 기초 지자체별 평균 선거인 수인 약 19만명⁶⁾ 및 과거 주민소환 평균 투표율(32.3%)를 고려하였을 때 투표인 수는 10만 미만일 가능성이 높음
- 추계 결과, 개정안에 따라 주민소환 투표 및 개표가 추가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억 1,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20억 1,7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주민소환 투표	372	379	387	395	403	1,936
주민소환 개표	39	0	0	0	42	82
합계	411	379	387	395	445	2,01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4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(2025년 4월 기준, 단위: %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소비자물가상승률	2.0	2.0	2.0	2.0	2.0	2.0

5) 개표 사무원 사례금, 개표소 설치비, 임차료 등 포함

6) 제8회 동시지방선거 선거인 수 44,303,449명(행정안전부 발표)을 기초 지자체 수 226개로 나누어 계산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이전 주민소환 투표 및 개표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
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nabo.go.kr